



202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신청

교원양성실무위원회는 본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추가 선발하고자 합니다.

1. 신청기간: 2023. 10. 31.(화) 9:00 ~ 11. 6.(월) 17:00

2. 대상: 교직과정 설치학과(전공)에 재학하고 있으며, 현재 이수한 학기가 2, 3, 4학기인 학생(4학기 이수 후 3월/9월 이전 휴학자까지 신청 가능)

3. 선발학과 및 인원: 각 학과(전공)별 교육부 승인인원(정원의 10%)

중어중문학 2명, 독어독문학 3명, 불어불문학 2명, 노어노문학 1명, 철학 2명, 심리학 1명, 생화학 1명, 컴퓨터과학 4명, 신학 4명, 피아노 1명, 의류환경학 2명, 식품영양학 1명

(* 붙임 ‘202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현황’ 파일 참고, 상기 학과는 2023-1학기에 선발 후 잔여T/O가 남아있는 학과임)

4. 선발방법: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(백분위) 50%, 교직 면접 50%를 합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

5. 면접: 2023. 11. 15.(수) 15:00~16:00 * 대면

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: 2023. 11. 14.(화) 11:00~12:00 * 대면

(적성 및 인성 검사, 면접 전형 대상자는 11. 10.(금) 16:00 교직부 홈페이지에 공지)

※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, 면접 미참여 시 자동 탈락

※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. 다만,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, 2배수 선발 인원만 면접을 실시함.

6. 신청방법: 연세포탈서비스 → 학사관리 → 이력 → 교직 메뉴에서 입력

(교직에 대한 소견 A4 1매 정도의 분량 작성)

7. 선발자 공고일 및 게시 장소: 2023. 12. 26.(화) 16:00

-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
8. 202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오리엔테이션: 일정 추후 공지



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

- ①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[기본이수분야 21학점(7과목)이상과 교과교육영역(00교육론, 00교재연구 및 지도법, 00논리 및 논술 등) 8학점 이상 포함].
- ②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/100점 이상이고,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/100점 이상
- ③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: 적격판정 2회 이상
- ④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: 2회 이상 이수
- ⑤ 성인지 교육: 2회 이상 이수
- ⑥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,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
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 -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*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* 아동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, 청소년대상 성범죄
 -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⑦ 교직과정 이수예정자('06학번 이후)로서 교직 복수(연계)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(연계)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, 선발은 매년 3월 말 실시함. 결원 발생 시 9월 말에 추가 선발 가능.

■ 유의사항

-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2, 3, 4학기인 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하며, 반드시 교직설치학과의 제1전공에 한하여 지원 가능.
- ②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, 이수한 학기가 4학기를 초과하면 신청 불가.
- ③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,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.
- ④ 교직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부터 이수 가능하며,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.

교원양성실무위원회